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4.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0. 5. 2
- 다. 상 정 일 자 : 2000. 5. 1 (제8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6. 23 (제8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실명 : 환경과장 김 재 월

나. 제정사유

- 화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의 시공(안 제4조)

- (1)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함
- (2)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나. 사용개시등의 신고(안 제8조)

- (1)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2)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 사용료(안 제12조)

- (1)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함.
- (2)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징수

라.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안 제15조)

- (1) 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
- (2)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며 그 사용료 완료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
- (3)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

마. 점용료(안 제16조)

- (1) 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수도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징수
- (2)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 (3)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도의 1월중에 징수, 허가시에는 연도분 선납
-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경우는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 산정징수
- (5)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점용 허가 취소 할 수 있음.

바. 원인자 부담금(안 제17조)

- (1) 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함.
- (2)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에 의함.
- (3)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전에 징수하며, 군수가 납부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사. 부과액조정 신청(안 제20조)

- (1)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 신청할 수 있음.
- (2)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아. 사용의 제한(안 제23조)

- (1)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하수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2) 사용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는 그 사용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하여 우리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하수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원인으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코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 본 조례 제정이 하수로 인한 환경파괴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범 군민적인 환경정화 노력이 뒤 따르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계속되어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것임.
- 아울러, 조례제정이후 하수도 사용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적정을 기하여 군민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준하여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조례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농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에 하수를 배제하는지,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 이라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2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5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 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 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읍·면장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8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불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시설

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구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급수구역외의 지역은 읍·면 하수도담당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결과를 군의 하수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 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포함), 공사비 (부대공사비 포함), 시공 감리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하수도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 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하수도공사가 필요 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하수도공사·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 부지조성 등)
- 3) 공항의 건설사업
-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 등)
- 5) 기타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
생량 산정방법에 의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군수
가 납부고지서 발부 후 15일이내에 관내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금) 군수는 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 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
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

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신고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하수도 사용 요율표

(제12조 제2항 관련)

(단위 : 수량 m³, 금액 원)

| 종별 구분 | | 사 용 요 율 | |
|----------|----|---------------------------|------------------------|
| | | 사용구분 (m ³ / 원) | m ³ 당 단가(원) |
| 가 정 용 | | 0 ~ 10 | 80 |
| | | 11 ~ 20 | 140 |
| | | 21 ~ 30 | 160 |
| | | 31 ~ 40 | 190 |
| | | 41 ~ 50 | 210 |
| | | 51 이상 | 270 |
| 업 무 용 | | 0 ~ 20 | 180 |
| | | 21 ~ 50 | 270 |
| | | 51 ~ 100 | 300 |
| | | 101 ~ 300 | 350 |
| | | 301 이상 | 400 |
| 영 업 용 | | 0 ~ 30 | 250 |
| | | 31 ~ 50 | 270 |
| | | 51 ~ 100 | 450 |
| | | 101 이상 | 820 |
| 욕 탕 용 | 1종 | 0 ~ 200 | 190 |
| | | 201 ~ 300 | 230 |
| | | 301 ~ 500 | 380 |
| | | 501 이상 | 410 |
| | 2종 | 0 ~ 200 | 230 |
| | | 201 ~ 300 | 330 |
| | | 301 ~ 500 | 420 |
| | | 501 이상 | 490 |

주)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 함.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제12조 제2항 관련)

| 업종 | 구 분 내 용 |
|-----|---|
| 가정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 업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소화전 · 군립위탁시설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외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 업종 | 구 분 내 용 |
|-----|---|
| 영업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에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업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 업종 | 구 분 내 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 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금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금 적용) · 의료법 및 인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 |
| 욕탕용 | 1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 | 2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헨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영업용" 이외의 안마시술소 |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제12조, 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 (mg/l) × 시간당폐수배출량 (m³)] × 1/1000 × kg단가 × 1일 조업시간 ×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

(제16조, 제1항 관련)

| 구 분 | 산 정 기 준 |
|----------------------------------|-------------------------------------|
|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
|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
|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
| 4. 기타 사유로 인한 하수도의 점용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제17조 제2항 관련)

□ 원인자 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m}^3\text{/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 (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100} \right)^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중간보고)

-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각종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특위가 구성됨.
- 지난 5월 27일부터 40일간의 조사기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가뭄과 농번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기에,
-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실것을 건의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1. 회의개최 (2회)

가. 제1차 회의개최결과 (2000. 5. 25)

- 특위구성(위원장, 간사선출)
 - 위원장 : 민용기 의원
 - 간 사 : 박윤수 의원
- 기금운용실태조사 계획 의결
 - 조사대상사무, 조사장소, 조사방법 등 조사활동계획의결 → 집행부 통보
 - 기금관련 각종자료 요구 → 지급 내역부등 6종

나. 제2차 회의 (2000. 6. 14)

- 2000. 6. 8 우리특위에 통보된 1차 자료요구분에 따른 질의 답변
- 추가자료 요구
 - 기금운용계획등 14건

2. 조사활동 경위

가. 기금운용 관련 법률 검토

-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 기관 지방재정 이론 관련 서적

- 기금관련 화순군 조례 9건

나. 기금운용 실태 점검 착안사항 작성

- 장학진흥기금등 9건의 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착안사항으로 작성 (자료 별첨)

- 착안사항은 특위위원회에 배부하여 연구, 검토중

다. 자료요구(1, 2차)에 대한 검토중

- 지급내역부등 6건 (6. 8집수)

- 기금 운용계획등 8개항목 14건 (6. 22집수)

3. 향후 계획 및 건의

가. 향후 추진계획

- 요구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하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 발굴

- 기금 운용관련 법규 및 조례를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나. 환농기간 연장 (건의)

- 보다 심도있는 조사 활동을 위해 본 특위 활동기간 연장건의

- 당초 : 2000. 5. 27 ~ 7. 5 (40일간)

- 연장 : 2000. 5. 27 ~ 8. 31 (97일간)